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30] [법률 제 9830 호, 2009.12.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보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 연혁** □ **제 1 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3 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3 조의 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4 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5 조(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 5 조의 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중전 제 5 조의 2 는 제 5 조의 3 으로 이동 <2009.12.29>]

- **제 5 조의 3(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 26 조 및 「지방재정법」 제 73 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 5 조의 2 에서 이동 <2009.12.29>]

- 연혁 □ **제 6 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 5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 등과 제 3 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 6 조의 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 5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대지급을 한 금액 및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 연혁 □ **제 7 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 3 조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 1 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8 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이 제 2 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9 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 9 조의 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연혁
- 제 10 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 11 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 12 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 1 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 □ 부칙 <제 4697 호, 1994.1.5>
 -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7394 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7723 호, 2005.12.14>
 -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9283 호, 200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9714 호, 2009.5.2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9830 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30] [기획재정부령 제 137 호, 2010. 3.30,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연혁 □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2 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3 조** 삭제 <2010.3.30>

연혁 □ **제 4 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 삭제 <2010.3.30>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 호서식의 제 3 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30>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⑤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연혁 □ **제 5 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 3 호의 2 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 11 조제 5 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 12 조제 2 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 ②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6 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6 조** 삭제 <2010.3.30>

연혁 □ **제 7 조(구매위임)** ① 영 제 9 조의 2 제 2 항제 4 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구매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 2 항에 따른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8 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9 조(비촉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비촉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비촉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촉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 12 조제 5 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촉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비촉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영 제 12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비촉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 37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촉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촉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촉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8 호서식의 비촉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10 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영 제 9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11 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 10 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10 호의 2 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 11 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 9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 등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12 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제 14 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및 제 17 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 12 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 12 호의 2 서식에 따른 합의서
 - ④ 조달청장은 제 3 항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13 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 등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4. 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그 밖의 참고서류
- ② 조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연혁 □ **제 14 조(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14 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 **제 15 조(연체료 부과기준)** 영 제 12 조제 6 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 천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 일을 초과하고 30 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 천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 천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0.3.30]

⊕ □ **부칙 <제 485 호, 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 511 호, 1995.7.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 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 519 호, 199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 44 호, 199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 408 호, 2005.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 137 호, 2010.3.30>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 15 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대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30] [대통령령 제 22087 호, 2010. 3.26,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기획재정부 ,

연혁 **제 1 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2 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3 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4 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 2 조제 4 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5 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지체상금)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6 조(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7 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 5 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 ⑤ 조달청장은 법 제 5 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 **제 7 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 5 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 인 이상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방이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방이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방은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 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 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 **제 8 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 5 조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 **제 9 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 5 조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법 제 5 조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 9 조의 2(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 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 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 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 억원) 이상인 것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 5 조의 2 제 1 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 2 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종전 제 9 조의 2 는 제 9 조의 3 으로 이동 <2010.3.26>]

연혁 □ **제 9 조의 3(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 5 조의 3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2 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5 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 46 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 9 조의 2 에서 이동 <2010.3.26>]

연혁 □ **제 10 조(수수료의 결정 등)** ①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 6 조제 3 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11 조 삭제 <2010.3.26>

연혁 제 12 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 5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② 삭제 <2009.8.25>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 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 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 5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

2. 법 제 5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제 10 조에 따른 수수료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 3 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 1 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0.3.26>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 일

2. 선급 대금: 14 일

3. 제 1 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 일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⑥ 법 제 6 조의 2 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 천분의 10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연혁 제 13 조(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3.26]

제 13 조의 2(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지도, 생산시설 및 품질 점검

2. 납품검사 및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3.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 1 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연혁 제 14 조 삭제 <2010.3.26>

연혁 제 15 조 삭제 <2010.3.26>

연혁 제 15 조의 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 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16 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에 본선사고(本船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제 17 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삭제 <2010.3.26>

② 삭제 <2010.3.26>

③ 삭제 <2010.3.26>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민간업체가 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⑥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자조달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⑦ 조달청장은 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⑧ 조달청장은 제 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전문개정 2004.12.31]

- 연혁** □ **제 18 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일 것
 2.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일 것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일 것
- ②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 1 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달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 1 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조달청장은 제 3 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조달청장은 법 제 9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연혁 □ 제 18 조의 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 를 말한다.

②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 18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물품 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인증된 기술 및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으로 구성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 18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③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 3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표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 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 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 4 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 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 9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 1 항부터 제 7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 18 조의 3(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취소) 법 제 9 조의 2 제 3 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 18 조제 1 항 또는 제 18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26]

연혁 **제 19 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조사 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의 감사·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닐 것
-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3 배의 범위에서 뇌물수수액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 백만원으로 한다.
-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 20 조(민관 공동 비촉사업의 참여대상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촉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 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 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
- ② 민관 공동 비촉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촉사업신청서에 비촉품목, 비촉기간 및 비촉물량 등을 적은 비촉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조달청장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촉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촉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촉사업자"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촉사업자의 승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촉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 21 조(민관 공동 비촉협약 등) ①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민간비촉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달청장과 비촉사업의 범위·방법, 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른 비촉물자의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 1 항의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 **제 22 조(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 12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른 우선 매각 대상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0 분의 10 이상일 것
2. 비축기간이 2 개월 이상일 것
3. 비축기간 중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조달청장은 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를 100 분의 50 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비축시설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제 23 조(우선 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조달청장이 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 22 조제 2 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환수
2.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취소
3. 승인취소 후 6 개월 동안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 제한

[본조신설 2010.3.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18] [법률 제 10290 호, 2010. 5.17,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 연혁** □ **제 1 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3 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3 조의 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4 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5 조(계약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③ 조달청장은 제 2 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 제 2 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7>

[전문개정 2009.12.29]

□ 제 5 조의 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중전 제 5 조의 2 는 제 5 조의 3 으로 이동 <2009.12.29>]

□ 제 5 조의 3(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 26 조 및 「지방재정법」 제 73 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 5 조의 2 에서 이동 <2009.12.29>]

- 연혁** □ **제 6 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 5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 등과 제 3 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 6 조의 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 5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대지급을 한 금액 및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 연혁** □ **제 7 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 3 조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 1 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8 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이 제 2 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연혁** □ **제 9 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 9 조의 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연혁 □ **제 10 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 11 조(비촉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촉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 ② 비촉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 12 조(민관 공동 비촉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촉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조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촉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촉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도 불구하고 비촉물자의 특성, 물량, 비촉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촉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촉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 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촉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부칙 <제 4697 호, 1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7394 호, 2005.3.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7723 호, 2005.12.1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9283 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9714 호, 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9830 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0290 호, 2010.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 8852 호, 2008. 2.29, 타법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106,7517,7445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연혁 □ **제 4 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 5 조 (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계약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제 7 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 8 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9 조 (입찰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 10 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제 11 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제 12 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 13 조 (감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 14 조 (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 15 조 (대가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 **제 16 조 (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 17 조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 671 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8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 12 조제 3 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 3 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 19 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연혁 □ **제 20 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제 20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제 21 조 (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 22 조 (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 23 조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 24 조 (종합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제 25 조 (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 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제 26 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 18 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은 제 1 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 **제 2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② 삭제 <1997.12.13>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14>

□ **제 28 조 (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 1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 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 **제 29 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 2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0 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 31 조 (심사·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 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후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 32 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연혁 □ **제 33 조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연혁 □ **제 34 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 □ **부칙 <제 4868 호, 1995.1.5>**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제 5 조제 2 항, 제 28 조 내지 제 31 조의 규정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 **부칙 <제 5453 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부칙 <제 5454 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이 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부칙 <제 6836 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 7722 호, 2005.12.14>**
이 법은 공포 후 3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부칙 <제 8050 호, 2006.10.4> (국가재정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부칙 <제 8852 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 6 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부터 제 5 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33 조 및 제 34 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 29 조제 1 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⑩ 부터 <760>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9. 1] [기획재정부령 제 95 호, 2009. 8.31,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106,7517,7445

제 76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영 제 76 조제 2 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6.5.25>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 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 분의 1 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5.25>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 분의 1 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 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5.25>

⑤ 삭제 <2006.5.25>

연혁 □ 제 77 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개정 1999.9.9, 2006.5.25>)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76 조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9.9>

③영 제 76 조제 6 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 15 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5.25>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 21834 호, 2009.11.20, 타법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106,7517,7445

제 76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 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3의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 조제 5 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4 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 2 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 19 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 42 조제 5 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 72 조 및 제 72 조의 2 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 42 조제 7 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 43 조제 8 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 94 조제 1 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 회이상 입찰(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14 의 2. 제 42 조제 4 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 87 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2 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 ②제 1 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5, 2008.2.29>
-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7>
-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2006.5.25, 2008.2.29>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 제 7 호 및 제 8 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2005.9.8, 2006.5.25, 2007.10.10>

⑨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 1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25, 2008.12.31>

⑪제 6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9.9, 2008.2.29>

제 94 조 (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5.25, 2007.10.10>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제 85 조의 2 또는 제 102 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8>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7]

제 96 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 93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5호, 2009. 5.2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공기업과) 02-2100-3932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21>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0조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조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15조 (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성이 실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선김급)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 (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② 제1항제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 (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27조 (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概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경제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공사
 - 나. 하천공사
 - 다. 상·하수도 관로공사
2. 제1호와 관련된 개산가격 2억원 미만인 설계 및 감리용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법률 제9423호(2009.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 (종합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 (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4조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7조 (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2조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과정·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지명과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부칙 <제9685호,2009. 5.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8.7 행정안전부령 제 95 호]

- 제 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영 제 9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 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 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 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 ⑤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 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 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 제 77 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개정 2007.10.5>) ①계약담당자는 영 제 92 조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영 제 92 조제 6 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 14 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7.10.5>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 21834 호]

제 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을 후 지체 없이 1 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호, 제 11 호 및 제 14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9.20, 2009.8.5>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4 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 2 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 88 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 16 조제 2 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 4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 43 조제 8 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 42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14 의 2. 제 4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 100 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 3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2 조제 9 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1>
-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⑦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 제 7 호 및 제 8 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하여야 한다.
-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 1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9.20, 2009.8.5>

⑪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1>

제 93 조(자료제출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 3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법 제 33 조제 2 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 106 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 91 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 2 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 107 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8 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 32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개정 2007.9.20, 2009.1.13>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 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 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 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 억원 이상)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 및 제 5 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09 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110 조(이의신청의 대상) ①법 제 34 조제 1 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 추정가격 70 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 추정가격 7 억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 추정가격 6 억원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 고시금액

②법 제 34 조제 1 항제 5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제 111 조(재심청구) ①법 제 3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 112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제 1 항의 규정 외에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12.31>

제 112 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12.31>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 113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 1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된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제 114 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②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③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④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자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⑥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⑦제 117 조, 제 118 조제 2 항·제 3 항 및 제 121 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⑧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15 조(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가 법 제 3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 118 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접수 후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개정 2009.8.5>

②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8.5>

제 116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1>

- 제 117 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둔다.

- 제 118 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제 1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19 조(조정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20 조(조정) ①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 제 34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1 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2 조(비용부담) ①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청구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1>

제 123 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1>

